

에이즈 진료비 부담과 지급절차

:: 편집실

정부는 HIV감염인·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이즈 진찰비, 검사비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. 또 올해부터 에이즈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로 지정되어 보험급여분 중 20%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.

보험의 급여분은 국가가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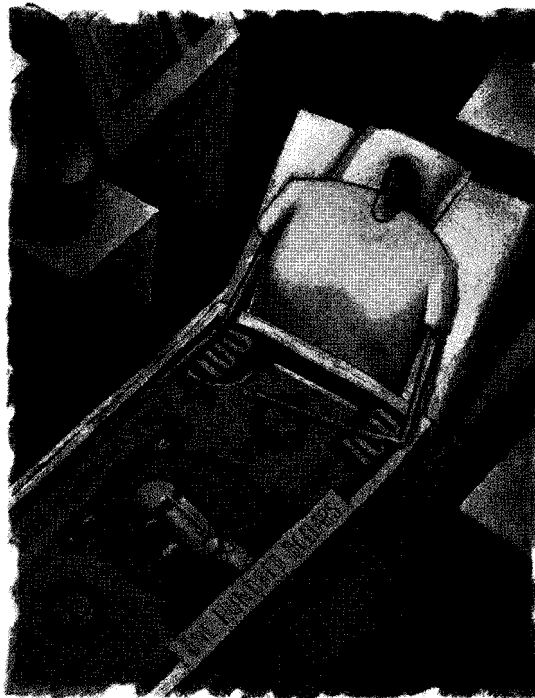
HIV감염인의 진료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.

국가가 부담하는 급여부분과 감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분이 있다.

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(비용부담) 및 동법시행령 제25조(비용부담)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.

HIV감염인의 진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만 지원하고 있으며, 본인부담분의 2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, 나머지 2분의 1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고 있다.

감염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전화사용료, 제 증명료,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부분과 간이영수증(수기용) 등이다.



현재 카테일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 대부분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나 만약 치료제 중 비급여로 청구 되었을 경우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감염인은 진료의사와 협의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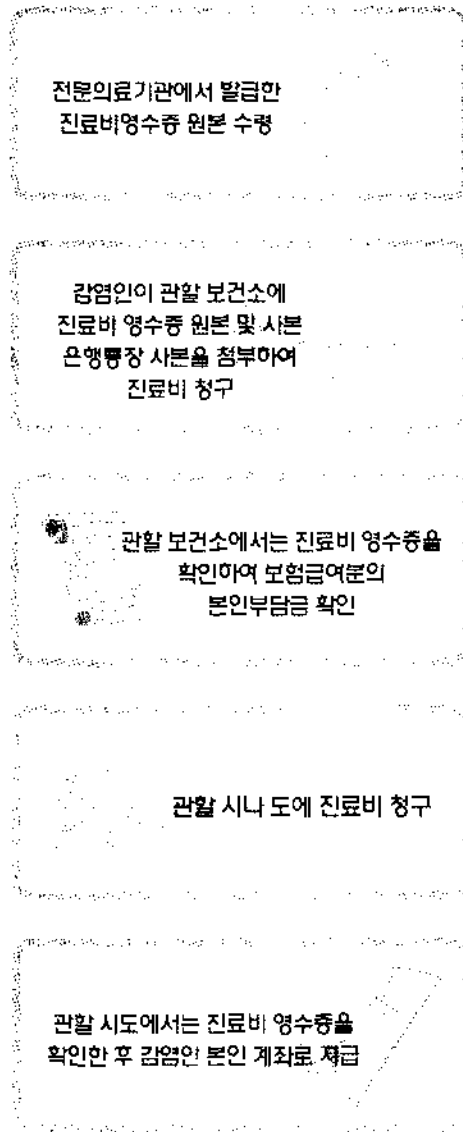
과거 질병관리본부의 면역결핍연구실에서만 무료였던 RNA정량검사는 올 8월부터 보험급여부분으로 편입되어 병원에서도

검체 배송료를 제외한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. 단 8월 이전의 검사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.

진료비의 지급절차

감염인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영수증원본 및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, 보건소

● 진료비의 지급절차



에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검토하여 진료비 영수증원본(시도 보 관용) 및 사본(보건복지부 제출용) 2부와 청구자의 은행통장 사 본 2부를 첨부하여 시도에 진료비를 청구한다. 그러면 관할 시 도에서는 검토하여 진료비를 지급한다. 단 서울특별시, 울산광역시, 경기도, 경상남도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등지에서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.

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질병관리본부 면역결핍연구실에서

최종 확인되어 에이즈·결핵관리과에 보고 및 등록된 날짜로부터 진료비가 지급되며 그 이전에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
또한 관할 보건소는 본인부담분을 선납하기 힘든 감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후불이 가능하도록 진료기관과의 협 의를 유도하고 있다. 이 경우, 진료비 청구 계좌는 당해 병원의 계좌를 기입해야 한다.